

건설클레임 해결 발전방안

전체 예산의 10% 확보 등 분쟁조정위원회 신뢰도 시급

한양대 김경래 교수

현재 시공자가 제기한 클레임은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나 조정 없이 바로 건설분쟁인 중재나 소송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주물량 감소나 경쟁심화로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클레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건설클레임이 건설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협상이나 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예비비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이를 가지고 클레임 청구, 자율적 협상, 계약금액 조정, 예산배정 등의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클레임 조정은 국내 계약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의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조정보다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이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클레임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클레임은 계약당사자 간의 의견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건설공사는 다단계 일품·주문생산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의 변화,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 클레임이 제기될 소지가 매우 높다. 불평등한 계약관계, 적절하지 못한 공사정보, 부적절한 설계와 시방서, 불충분한 입찰 준비기간 등이 상존하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클레임의 역할이 절실히다.